

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

- 2024년 5월 현재 기준 -

구 분		해당되는 사람	심사 기간	신청 시기
혼인귀화 (국적법6조2항)		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※ 단, 혼인기간, 가족형태,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<u>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</u>	약 19개월 (10개월)	2022년 10월 이전 (2023년 7월 이전)
특별 귀화 (7조 1항1호)	면접 대상	국적회복/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	약 19개월	2022년 10월 이전
	면접 면제	만 15세 미만인 사람	약 8개월	2023년 9월 이전
간이귀화 (6조1항1~3호)		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	약 19개월	2022년 10월 이전
		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	약 12개월	2023년 5월 이전
		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	약 19개월	2022년 10월 이전
일반귀화 (5조)		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 (F-5)자격을 소지한 사람	약 19개월	2022년 10월 이전
국적회복 (9조)		국적회복 신청자	약 7개월	2023년 10월 이전

【유의 사항】

- 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(또는 불허)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, 개인별로 차이*가 있을 수 있음
*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, 실태조사 (재조사) 필요 여부, 보완서류, 관계기관 의견조회(범죄·수사경력, 신원조회) 등
- 귀화: 장기 출국, 보완 요청 서류 미제출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
- 국적회복: 「국적법」 제10조 제2항 제4호(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)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(복수국적 인정)을 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 허가시점에 국내 입국 필요
-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(수여식 일시·장소는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)